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

연 번	안 건 명	소 관 부 서	소관상임위원회
1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공보담당관실	기획총무위원회
2	○성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기획담당관실	"
3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시 정 과	"
4	○성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사 회 진 흥 과	"
5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6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7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
8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
9	○성남시의회의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	"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비 고
1	성남시시정소식 발행조례중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시민에게 자치행정의 추진사항과 생활정보를 널리 알리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정소식지 규격 조정 및 발행횟수를 매월 1회로 조정 (안 제3조) ○ 소식지 게재내용의 다양화 및 시민참여란 확대조정 (안 제5조) ○ 시정소식 편집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원을 위촉토록 함. (안 제6조) ○ 시정소식 발행을 위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을 위한 명예기자를 둠. (안 제9조) ○ 공무원 이외의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 등에 수당지급 규정을 둠. (안 제10조)	공보담당관실	기획총무
2	성남시자치법규 안입법예고조례 (안)	☐ 제안이유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12602호 '97. 12. 31) 제20조제2항에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간 훈령에 의거 운영하고 있던 조례·규칙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시 입법예고 대상을 명시함 (안 제2조)	기획담당관실	기획총무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비 고
		☐ 주요골자 ○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시 입법예고 대상을 명시함. (안 제2조) ○ 입법예고문 작성을 한글로 명문화하고 예고 방법과 주민전파 노력을 규정함. (안 제4조) ○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단축 가능 규정을 둠. (안 제5조) ○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반영과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토록 의무화 함. (안 제9조)		
3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제안이유 국가가 지향하는 행정개혁추진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사무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하여 사무의 자동화등으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주요골자 ○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규정 (안 제4조)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규정 (안 제5조, 6조) ○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위원은 6~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함. (안 제7조)	시 정 과	기획총무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비 고
4	성남시자원봉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지휘·감독사항 명시 (안 제10조, 11조)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사항 규정 (안 제13조) □ 제안이유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이를 시민운동으로 정착시킴과 동시 에 자원봉사자들이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함. □ 주요골자 ○당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 위를 규정함. (안 제 4조) 【성남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 ○발전위원회 기능 규정 (안 제7조)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외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함. (안 제8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당연직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함. (안 제9조)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센터설치는 시에 1개소를 원칙으로함. (안 제10조) ○센터의 운영 및 재원 규정 (안 제12조, 15조)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근거규정 마련(안 제20조,24조)	사회진흥과	기획총무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비 고
5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중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에 관한사항을 보다 명확히하고, 소위원회 활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함. □ 주요골자 ○ 특별위원회 구성시 활동기간 지정 (안 제7조 제5항 - 신설) ·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본회의 의결로 기간연장 가능 ○ 활동계획 수립 및 심사보고서 제출등 (안 제7조 제6항 - 신설) · 특별위원회 구성직후 활동계획서 수립, 본회의에 보고 · 활동기간 종료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 ·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특별위원회 존속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6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성남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관계공무원의 범위 규정(안 제2조)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비 고
7	성남시의회의원 상해등보상금지 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2호중 “실·과장급”을 “과장급”으로 하고, · 제3호중 “소속행정기관장”을 “소속행정 기관장 및 과장급”으로 하고, · 제4호중 “소속행정기관”을 “법제108조 내지 제11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 기관”으로 하며, “실·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개정함. ☐ 제안이유 ○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중 착오로 잘못된 용어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보상금 지급기준중 “시도의원”을 “시의원” 으로 함(안 제4조) ○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구좌”를 “계좌”로 개정(안 제8조 제1항) ○ 조항의 제명개정(안 제11조,제14조,제15조) · 제11조의 괄호내“심의위원회의 임기”를 “심의위원의 임기”로 개정 · 제14조의 괄호내“심의회회 간사”를 “심 의회 간사”로 개정 · 제15조의 괄호내“심의회회 수당등”을 “심의회 수당등”으로 개정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비 고
8	성남시의회회의 규칙중개정규칙(안)	☐ 제안이유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중 집행부에 대한 질문 에 관하여 시간제한 및 제반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함. ☐ 주요골자 ○ 투표절차에 의장의 투표시기 지정 (안 제42조 제4항) ○ 의장,감표위원은 다른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후에 투표 ○ 집행부에 대한질문 규정 신설(안 제66조의 2) · 질문시간 : 20분(보충질문→10분) · 의장은 필요시 보충질문 허가 · 질문요지서 제출 : 미리구체적으로 작성 하여 제출(의원→의장) · 질문요지서송부 :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의장→시장)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9	성남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중 개정규칙(안)	☐ 제안이유 ○ 성남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의 규격·제식 및 색상에 대한 규정을 개정 하여 보다 세련되고 품위를 높이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변경 (안 제3조 제1항 별표)	의회사무국	의회운영